

『2023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(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) 분야 R&D지원 사업』
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『2023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R&D지원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6월 22일
경기도지사
한국나노기술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목적
 - 인공지능(AI)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 모듈화 및 시스템화 등 제품화 시 High End Advanced 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
- 사업기간 : 2023. 8월 ~ 11월
- 지원대상 :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- 지원규모

구 분		도 지원금	기업부담금	합계	선정 수
①기술컨설팅 지원		-	-	-	예산범위 내 상시접수
②R&D 지원	초기	10,000천원	1,000천원 이상 (현금 50% + 현물 50%)	11,000천원 이상	5개社 내외
	심화	50,000천원	10,000천원 이상 (현금 50% + 현물 50%)	60,000천원 이상	4개社 내외

※ 도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 기준,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 제외

2. 신청자격

- ☐ (초기 R&D) K-스타트업(www.kstartup.go.kr)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(주민등록지)인 예비창업자

※ (협약後) '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' 입주 필수

※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

[참고] 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

- ①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
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 - ②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
- ※ 관련법령 :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

- ☐ (심화 R&D/기술컨설팅)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

※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), 공장등록증명서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(근거 :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45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)

※ (시스템반도체 전주기 기술지원) 1차 초기R&D 분야 사업수행을 완료한 기업은 2차 심화R&D 신청 및 연속 지원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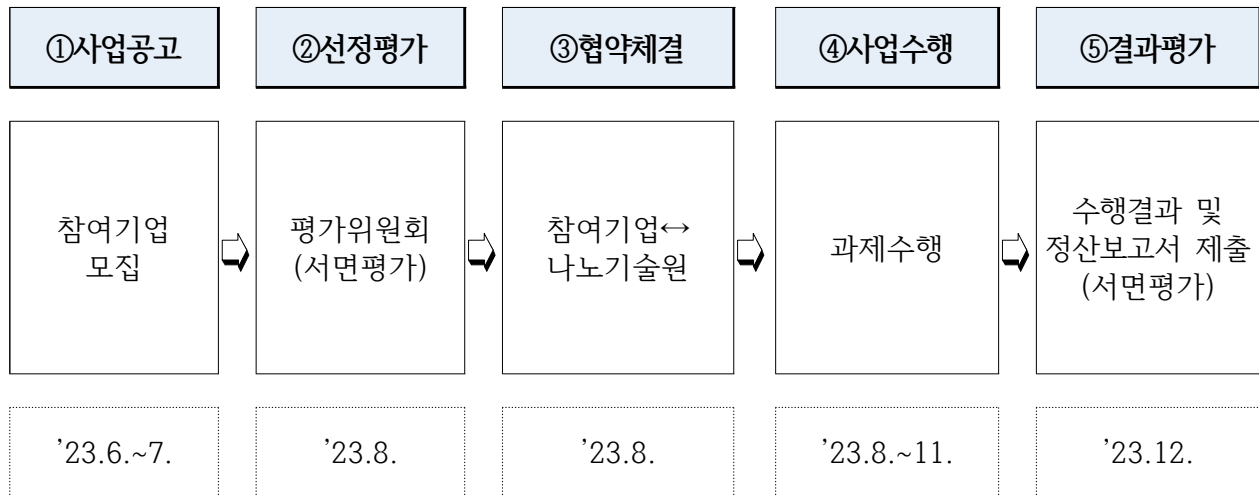
3.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

- ☐ 사업내용

- (기술컨설팅)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,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
- (초기 R&D)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·개선 및 시작품(Prototype)제작,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
- (심화 R&D)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(상품화) 단계에서 제조 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, 교육 등 지원
- (사업비 구성)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,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/시제품 제작경비,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 등 **총사업비 내 자율 구성**

※ 「OSAT 기술컨설팅 지원」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
□ 추진절차



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 될 수 있음.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3년 6월 22일(목) ~ 7월 26일(수) 16:00까지

※ 「OSAT 기술컨설팅 지원」의 경우 상시 모집

□ 신청서류 :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[붙임] 참조

□ 신청방법 : 신청서류 E-mail(yura.choi@kanc.re.kr) 제출

□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

주관기관	전 화	E-mail
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	031-546-6241	yura.choi@kanc.re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선정방법

□ 평가방법

- (기술컨설팅 지원)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,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
- (R&D 지원)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,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

□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

- (기술컨설팅 지원) 기술컨설팅의 필요성, 시급성, 전문가 매칭 가능성, 초기 및 심화 R&D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- (R&D 지원)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, 기술성,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구분	평가지표	배점
추진계획 및 적정성 (30)	◦ 추진계획(또는 입주계획)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구체성	10
	◦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	10
	◦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(나노팝 활용 등) 가능성	10
기술성 (30)	◦ 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구현의 현실성	10
	◦ 개발 기술의 타기술(경쟁자) 대비 독창성·차별성	10
	◦ 기술 보유 현황 (인증, 특허 등) 및 획득 가능성	10
시장성 및 창출효과 (40)	◦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진출 파급효과	10
	◦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	10
	◦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수출가능성	10
	◦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	10
합 계		100

□ 가·감점 사항

가점 (우대사항)	-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- 한국나노기술원 나노패팜 활용 또는 기술이전 경험(예정)자	각 3점
	- 만 39세 미만 청년 창업자 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-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최근2년) - 청년창업사관학교(청년튜터링100), 소공인 특화지원센터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추천기업 - 재기 1인 창조기업(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)	각1점 (최대3점)
감점	-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기업(1회 이상) * 경기도 고시 제2023-6호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(2023.1.11.)」에 따름	평가 총점의 20%

□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(70점 미만 시 탈락)

□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보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

6. 기타사항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- OSAT R&D지원(초기/심화)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先 지급됨(단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※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함(사업비로 불인정)

□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(초기 R&D만 해당)

-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1년 단위 입주협약 체결(창업활동이 우수한 입주자는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- 최대 2년) * 별도 협약 체결
- 단, 타 센터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)에 입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기간이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전담매니저의 상시상담 및 성과관리를 통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(교육, 멘토링, 분야별 네트워킹 등) 지원

□ 지원제외대상
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- 가. 부도기업
 - 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- 다. 자본전액잠식 또는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중소기업
 - 라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- 마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중소(견)기업
 - 바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
주의사항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제재됨
 - 가.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 - 나.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다.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 -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(2023.1.11.)」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을 적용
 - 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- 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 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- 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